환경부

K water 한국수자원공사

붙임 3

우대사항 및 제출서류

우대사항

구 분	대 상		가 점	제출서류
법률상 가 점	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		각 전형 단계별 점수 만점의 5% 또는 10%	입사지원서에 보훈번호, 가점비율 등 정보 입력
특 별 가 점	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		1차전형 점수 만점의 5%	장애인증명서 스캔본 첨부
	재직 중인 직원	2년이상 3년 미만 근무자	1차전형 점수 만점의 5%	재직증명서 스캔본 첨부
		3년이상 근무자	1차전형 점수 만점의 10%	

【취업지원대상자 전형별 가점부여 기준】

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선발단위 선발 인원의 30%를 초과할 수 없음

* 세부내용은 국가보훈처 '취업지원 업무처리지침' 제41조의 3에 따름

☐ 단, 동점자일 경우에는 선발 예정의 30%를 초과하여 합격 가능

【우대사항 세부 인정 범위】

- 취업지원대상자 범위
  - ○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
  - ○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
  - ○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
  - ○ 5.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
  - ○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
  - ○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
- 장애인 범위 : 장애인복지법 제2조
- 재직 중인 직원 : 직제규정에 의한 직원(「실무직 및 특수직관리규정」에 따른 실무직 포함)

환경부

K water 한국수자원공사

제출서류

- 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 지원자 편의를 위해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고, 입사지원 시 작성한 정보로 진위여부를 확인하여 우대 사항을 인정하므로 보훈번호·가점비율 등 정보 입력 유의 붙임6
  * 최종 합격 시 『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』 제출
- 장애인증명서는 관련 기관 방문 등을 통한 발급 시 진위여부 확인에 어려움이 있어, 정부24(www.gov.kr)에서 2020.04.02. (1차전형 마지막 일자 기준 90일전) 이후 인터넷 발급한 서류만 진위여부를 확인하여 우대사항 인정 붙임7

※ 제출서류에 개인신상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블라인드 처리 후 제출

※ 최종 합격시 원본서류 제출